

이천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00. 6.
제출자 : 이천시장

제안이유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제한 규제내용을 관련법령의 범위안에서 투명하게 규정하고, 행정의 자의성 배제를 위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허가시 향토유적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보호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을 마련함
(안 제7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2항제1호).

이천시조례 제 호

이천시 향토유적 보호조례증개정조례안

이천시 향토유적 보호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호증 “건축허가” 다음에 “·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을 신설한다.

단, 향토유적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시장은 보호구역내에서 다음행위를 하고자 하는 허가·신고·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 유적보호를 위하여 그 허가·신고·신청건에 대해 신청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구 분	지 정 기 준
1. 사적의 보호구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곽 등은 벽면 하부 기석에서 외향 및 내향 각각 20미터 내지 50미터이내의 구역 2. 성 · 산성 · 성내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벽면 하부 기석에서 외향 20미터 내지 50미터이내의 구역 3. 제방은 성곽에 준한다. 4. 왕릉 · 고분묘 등은 봉토 하단에서 10미터 내지 1천미터이내의 구역 5. 사지 · 사우지 · 전묘지 · 고궁 등은 담장 또는 경계선에서 5미터 내지 50미터이내의 구역 6. 목조건축물 · 석조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은 국보 · 보물의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의한다 7. 기타 사적의 보호구역은 그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보호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상의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은 철책 · 석책 · 위장 기타 당해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2. 동종 · 석비 · 불상 등은 종각 · 비각 · 불각 3. 기타 문화재는 그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3. 보호물이 있는 경우의 보호구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물이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 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 기타 최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떻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외향 5미터 내지 50미터이내의 구역 2. 보호물이 석책 · 철책 · 위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기석에서 2미터이내의 구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 (보호구역설정) ①시장은 향토유적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신설></p> <p>②시장은 보호구역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 고자 하는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 유적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p> <p>1. 보호구역내에서의 건축허가 <신설></p> <p>2. 보호구역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설></p>	<p>제7조 (보호구역설정) ①-----</p> <p>----- . 단, 향토유적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 표와 같다.</p> <p>②시장은 보호구역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 고자 하는 허가·신고·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적보호를 위하여 그 허가·신고·신청건에 대해 신청자와 협의하여 처 리하여야 한다.</p> <p>1. 보호구역내에서의 건축허가 ·신고 또 는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p> <p>2. -----</p> <p>[별표] (내용 별첨)</p>

[별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구 분	지정기준
1. 사적의 보호구역	<p>1. 성곽 등은 벽면 하부 기석에서 외향 및 내향 각각 20미터 내지 50미터이내의 구역</p> <p>2. 성·산성·성내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벽면 하부 기석에서 외향 20미터 내지 50미터이내의 구역</p> <p>3. 제방은 성곽에 준한다.</p> <p>4. 유통·고분묘 등은 봉토 하단에서 10미터 내지 1천미터이내의 구역</p> <p>5. 사지·사우지·전묘지·고궁 등은 담장 또는 경계선에서 5미터 내지 50미터이내의 구역</p> <p>6. 목조건축물·석조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은 국보·보물의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의한다</p> <p>7. 기타 사적의 보호구역은 그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p>
2. 보호물	<p>1. 지상의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을 철책·석책·위장 기타 당해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p> <p>2. 동종·석비·불상 등은 종각·비각·불각</p> <p>3. 기타 문화재는 그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p>
3. 보호물이 있는 경우의 보호구역	<p>1. 보호물이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 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 기타 최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맞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외향 5미터 내지 50미터이내의 구역</p> <p>2. 보호물이 석책·철책·위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기석에서 2미터이내의 구역</p>